

파주시동물방역관리센터설치·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58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6. 29.

제출자 : 파주시장

☐ 제정이유

구제역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방역 및 진료를 통해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물방역관리센터를 설치·운영하려는 것임

☐ 주요골자

가. 방역센터의 기능은 가축질병의 예찰·진료·조사연구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과 외래성 질병의 감시활동을 주임무로 함 (안 제3조)

나. 방역센터내에 5명이내의 축탁수의사와 3명이내의 사무보조원을 두도록 하고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(안 제5조)

다. 축탁수의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6조·8조)

라. 시장은 방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성비를 지원하도록 함(안 제10조)

마. 방역센터는 가축질병 진단실과 양돈공동방역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농축산과장이 총괄 관리하도록 함 (안 제9조)

바. 축탁수의사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방역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(안 제11조·제12조)

파주시동물방역관리센터설치·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파주시동물방역관리센터(이하“방역센터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방역센터는 파주시관할구역내에 둔다.

제3조(기능) 방역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가축질병의 조사·연구
2. 가축전염병의 예찰·예방 및 진료
3. 가축의 보건증진과 위생관리
4. 가축전염병 방역 및 외래성질병 감시
5. 가축분뇨 유입우려 하천의 수질오염도 관리
6. 기타 가축질병예방 및 진료에 따른 지원

제4조(사업) 방역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.

1. 가축질병의 예찰 및 시험 조사 연구
 - 가. 가축질병예찰농가 선정
 - 나. 지역별, 종축별로 정기적인 가검물 채취 및 검사
 - 다.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
 - 라. 가축질병 발생에 대비한 신고체제 유지
2. 가축방역
 - 가.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년중 방역 실시
 - 나. 가축법정 1, 2종 전염병 예방약 비치 및 예방접종 실시
 - 다. 야생동물 방역용 「먹이백신」 살포등 야생동물 방역 실시
3. 가축분뇨 유입하천 관리
 - 가. 주요하천의 수질검사등 정기 검사 실시
 - 나. 하천유역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시설 관리 강화

제5조(촉탁수의사의 위촉) ①방역센터에는 5명 이내의 촉탁수의사와 3명 이내의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 촉탁수의사는 개업중인 의사 또는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 관련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③ 보조사무원은 축산관련 공무원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.

제6조(위촉기간) 촉탁 의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해촉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 위촉할 수 있다.

제7조(촉탁수의사의 임무) 촉탁수의사는 시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진료
2. 가축질병의 조사·연구
3. 가축의 병성감정 및 폐수검안
4. 가축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
5. 기타 가축질병의 진료 및 예방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.

제8조(해촉사유) 시장은 촉탁수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
2. 신체·정신적 결함으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
3. 특별한 사유없이 임무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거부하는 경우
4.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가축진료 또는 예방활동중에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
5.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

제9조(관리체계) ①방역센터에서는 가축질병진단실과 양돈공동방역사업단을 총괄하며,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농축산과장은 방역센터내의 예산지원, 인력관리, 활동상황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총괄 관리한다.

제10조(운영지원) ① 시장은 방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경비를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1조(수당 및 여비) ① 촉탁수의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촉탁수의사가 시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 할 때의 여비지급은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를 준용한다.

제12조(근무방법) ①촉탁수의사는 방역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중인 촉탁수의사의 경우에는 당해 개업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.

②촉탁수의사의 근무시간·근무수칙등 구체적인 근무요령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3조(기록·관리) 촉탁수의사는 근무상황을 업무일지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하며, 근무중에 발생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농축산과 ☎ 940-4603
입 안 자	농축산과장	박 신 규
	축산환경담당	현 상 무
	담 당 자	황 민 수